

경운대학교 나눔혁신센터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나눔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문화·예술·디자인·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2. 사회복지사업을 포함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3.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교육과 디자인적 접근을 활용한 지역참여형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4. 국제적 교류와 예술·문화 활동을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한다.
5. 사회적 가치 창출과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실현을 도모한다.

제 2 장 조 직

제3조(소재지) ① 본 센터의 소재지(사무소)는 경상북도 구미시에 소재한 경운대학교 내에 둔다.

② 센터는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광역시 및 도에 별도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센터는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외 지원사업 대상 국가에 별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나눔혁신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재 정 및 기 타

제8조(재정)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재정은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 등의 공적자금, 민간기업과 민간단체 등의 기부금, 지정 및 위탁 지원사업금, 연구사업의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우리대학교 예산회계업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25.11.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